

#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숙남 의원)

의안 번호	15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정숙남, 이종희, 김판조,  
이묘배 의원(4명)

찬 성 자 : 박일배, 김석규, 김지원,  
송은영, 최순희, 최복춘,  
이기준, 정성훈, 신재향  
의원(9명)

## 1. 제안이유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마을상수도를 지방 및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옥외시설 급수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도 전환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기존 공사비 지원과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여 재정 운용의 형평성과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급수시설 공사비 지원 조항 정비
-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포함)를 지방 및 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해 마을별 집단 신설공사 시 공사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제3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시설의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가정용 급수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세대: 50퍼센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50퍼센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세대: 50퍼센트
4.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포함)를 지방·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마을별 집단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경우(단, 개별 급수공사 신청 및 마을상수도와 지방·광역상수도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30퍼센트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소유하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가정용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은 공사비의 50퍼센트로 한다.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세대</p> <p>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p> <p>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p>	<p>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의 국가유공자 세대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가정용 급수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각 호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세대: 50퍼센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50퍼센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 세대: 50퍼센트

4.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포함)를 지방·광역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마을별 집단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경우(단, 개별 급수공사 신청 및 마을상수

② ~ ⑤ (생략)

도와 지방·광역상수도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30퍼센트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관 계 법 령

###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